회의자료

중소기업이 경제의 심장,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2020. 6. 30

KBIZ 중소기업중앙회

진 행 순 서

□ 개 회 (사회 : 인력정책실장)

□ 참석자 소개 및 사진촬영

□ 인사말씀

□ 안건보고

- ㅇ 최저임금 심의 대응
- ㅇ 최근 노사관계 동향
- ㅇ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및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 안내

□ 현장애로 토의

□ 폐 회

논의안건

Ⅰ 최저임금 심의 대응

최저임금 동향 및 주요 경과

1 최저임금 심의 동향

○ 3. 31(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 6. 5(금)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 위촉 완료

- 민주노총 위원 4인 전원, 한국노총 위원 2인 교체

○ 6. 11(목) 첫 전원회의 개최 : 심의안건 상정 및 향후 일정 수립

○ 6. 18(목)~23(화) 전문위원회, 현장방문, 지역별 공청회 등 실시

○ 6. 25(목)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집중 심의 시작

○ 7월 셋째 주 결정 예상

○ 민주노총(6.19), 내년 최저임금 10,770원(약 25%인상, 월225만원) 제시

※ 6.25 헌법재판소,「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8시간) 포함 시행령」합헌 결정

* 48시간(주40시간 + **주8시간**) x 4.35주 = 209시간

2 본회 대응 경과 및 계획

○ 6. 2(화) 중소기업 고용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보도

○ 6. 8(월)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개최

○ 6. 17(수)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 본회 회장님 간담

○ 6. 18(목) ~ 23(화) 중소기업근로자 의견조사 실시

○ 6. 24(수) 국무총리-중앙회장 오찬시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 언급

○ 7월 초 중단협 공동성명, 경제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 계획

최저임금 현황

1 최저임금 수준

시급	월급 (주휴수당 포함)	연봉
8,590원	**180만원** (1,795,310원)	**2,150만원**

< 최근 10년간 주요 경제지표 비교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2.87	7.7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2	1.3	1.3	0.7	1.0	1.9	1.5	0.4	0.3	1.46
경제성장률	3.7	2.4	3.2	3.2	2.8	2.9	3.2	2.7	2.0	-0.2	2.59

* '98년 **IMF 때 2.7%** 인상 (표결로 근로자측안 선정)
*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2.75%** 인상 (표결로 공익안 선정)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금액 추이 >

2 최저임금액과 실제 인건비 비교 (월 기준)

3 관련 현황

○ **(최저임금 미만 현황) 이미 '19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근로자의 16.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

- **미만근로자 비중은 지속 증가**하며, 이 중 **64.9%는 10인 미만 기업 근무**

  ※ 미만율(%) : ('14년)12.0 → ('16년)13.5 → ('18년)15.5 → ('19년)**16.5**

  ※ 미만근로자 분포(%) : (1-4인)41.4, (5-9인)23.5, (10-29인)19.0, (30-99인)10.3

- **규모와 업종별 편차**가 심해, 일부 규모와 업종은 근로자 1/3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 (1-4인)**37.0%**, (5-9인)**21.8%** / (숙박음식업)42.8%, (기타서비스업)28.3%

○ **(관련 연구 및 조사 결과)**

- 수도권 소재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 대상 조사(한경연)
  :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 인하 의견도 14.5%

- 16.4% 올랐던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인상돼야 하는 영향근로자는 그 차상위 근로자보다 고용감소에 더 큰 영향(한경연)

- 내년 최저임금 5% 인상시 동결시보다 2021년 GDP는 1.87% 줄어들 것으로 전망. 고용도 21만4200명 감소 예측(매경, 한경연)

※ [독일 사례] 집권여당 일부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 의견

독일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 내 경제 및 에너지정책 전문위원회(연방하원)는 **당면한 경제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독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경제 재시동을 위한 10가지 과제'**라는 정책제안서 당내 회람용으로 제출('20.5.26)

- ①최저임금, ②통일연대세, ③사회보장세, ④근로시간법 다루나 원문은 비공개

* 출처 : 독일 현지 언론 한델스브라트(Handelsbratt), 슈피겔(Spiegel)

- 그러나, 집권당(기민당) 내부 및 야당(사민당)의 비판의 목소리 커

  · (기민당) 의장 크람프 카렌바우어, "최저임금은 건들지 말아야"

  · (기민당) 사무국장 지미악, "식량 가격 많이 올라, 최저임금 삭감은 부적절"

  · (사민당) 원내대표 마스트, "저소득 근로자를 고려하지 않은 제안으로, 경제 정상화보다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조사결과

1 중소기업 CEO 의견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5.4(월)~11(월)

○ 조사대상 :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600개사**

- 수도권(36.2), 지방(63.8) / 제조 : 비제조(도소매, 숙박음식/개인서비스) = 1:1
- 규모 : (1~9인)29.3%, (10~29인)34.0%, (30~99인)21.7%, (100~300인)15.0%

◈ 조사 결과

○ 작년 비교 **현재 경영상황 : 악화(76.7)**, 비슷한 수준(23.0)

- **1분기 실적 악화(75.3), 2분기 예상 악화(65.7)**

○ 현재 상황 지속시 **감원 불가피한 시기 : 6개월 이내 33%, 9개월 이내 45%**

* 1개월 이내(4.3), 1~3개월(16.2), 4~6개월(12.5), 6~9개월(12.0), 9개월 이상(16.5), 없음(38.5)

○ **코로나 종료 후 경영·고용상황 회복 소요기간 : 6개월 이상 56.5%**

* 6개월~1년 소요(31.3), 1년 이상(20.5), 장기간 기대 어려움(4.7)

○ **내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 : 10개 중 9개 기업은 동결 또는 인하 (88.1%)**

* 동결(80.8), 인하(7.3), 1%내외 인상(9.2), 2~3%이내(2.5)

○ **인상시 대응방법 : 신규채용 축소(44.0)**, 모르겠음(21.5), 감원(14.8)

○ **합리적 구분 적용 기준 : 업종(49.5),** 종사자 **직무(46.2)**, 규모(28.0), 종사자 노동생산성(24.7), 지역(3.3)

○ **고용유지를 위한 최우선 정부지원 : 인건비 지원 확대(50.0)**

* 사회보험료 감면(26.2), 인건비 지원절차 간소화(10.3), 인건비 융자확대(11.8)

2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 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6.18(목)~23(화)

○ 조사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

- 수도권(46.3), 지방(53.8) / 제조(뿌리 101개, 수출84개 포함) : 비제조 = 2:1
- 규모 : (1~9인)25%, (10~29인)30%, (30~99인)25%, (100~300인)20%

◈ 조사결과

○ **내년 최저임금 수준 : 동결 또는 인하(56.7%)**

- **동결(51.7), 인하(5)**, 인상(43.3)

  * 2020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는 근로자대상 최저임금위원회 조사결과(23.1%)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 (급격히 오르기 전 평균은 4% 수준이었음)

- 인상 또는 인하시 그 수준

	1% 내외	2~3% 대	4~5% 대	6~7% 대	8% 이상
인하 수준(n=20)	10.0	40.0	25.0	-	25.0
인상 수준(n=173)	11.0	43.4	24.8	6.4	14.4

○ **노사정이 고용유지 대신 최저임금 동결 합의에 대한 생각 : 찬성(63.0)**

- 반대(11.8), 모르겠음(25.2)

○ **가장 시급한 정부 노동정책 : 고용유지(83.4%)**

- 근로시간단축(10.7), 임금인상(2.5)

<'21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 비중>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근로자
88.1% (동결 80.8%, 인하 7.3%)	**56.7% (동결 51.7%, 인하 5%)**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성 명	직 위	비 고
공익 위원	-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장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근로자 위원	한국 노총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신규(보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신규(보궐)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민주 노총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신규(보궐)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신규(보궐)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신규(보궐)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신규(보궐)
사용자 위원	경총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본회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상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부동산사업(조)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무협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	

* 임기 : 2021. 5. 13까지

논의안건

Ⅱ 최근 노사관계 동향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 회의 관련 동향

□ 배　경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 운영방식

○ 총리 주재로 **기존의 노·사·정 방식**의 운영

- **참여주체** : **勞**(한노총, 민노총), **使**(경총, 상의), **政**(기재부, 고용부)

  * 경사노위, 일자리위 옵저버로 참여

□ 회의동향

○ **5. 20(수) 총리 주재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차 6.18(목) 2차 회의 및 6.24(수) 부대표급 회의 등 지속 추진

- **6월 중 합의**에 대해 **노사정 공감대 형성** 되었으나, **각론에서 이견**

□ 노사정 입장

○ **노동계** : **해고금지**(이를 전제로 임금인상자제 노력), 임금인상분 상생연대기금 조성,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 **입장**에 **온도차**(임금 인상 등, 민노총 최저임금 25%인상 주장 vs 한노총 비현실적)

○ **경영계** : "고용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인상 불가"
→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하되, 노동계 **임금삭감 등 고통분담 수용 필요**

○ **정　부** : **"6월말까지 합의 도출 강조"**
→ 지난주부터 ⅰ)**실무회의**와 ⅱ)**부단체장 회의 2트랙 진행**

※ 경사노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주요내용(3.6)

(경영계) 고용유지(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직 등) 적극 노력
(노동계) 임금, 단체 교섭 시기·기간 탄력 조정 및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해결에 협조
(정　부)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체불근로자 지원 등)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현황

□ 논의 쟁점

○ **현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전부 비준을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

* 핵심협약(8개) : **(비준 X)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금지(제29호, 제105호)**, (비준 O) 차별금지(제100호, 제111호), 아동노동금지(제138호, 제182호)

- 비준을 위해 **ILO 핵심협약과 배치되는 노동조합법 등 법안 개정 필요**

□ 논의 경과

○ **경사노위**(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에서 `18년 7월부터 `19년 5월까지 **노동조합법 등 제도개선 논의**

○ **고용부** EU와의 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제출**(`19.10.1) *** 20대 국회종료로 자동 폐기**

- 핵심은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급여 금지 원칙 삭제 등**

○ **고용부** ILO핵심협약 비준 재추진 위해 같은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5.28~6,9) → 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3)** 후 **국회 제출**

- 이와 관련 **경영계**는 **공동명의***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6.9)**

* 본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단체

□ 경영계 주요의견

○ ILO핵심협약 비준 **필요성 동의**하나,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단결권 강화만 될 경우 기울어져 있는 힘의 균형이 노조 측으로 더 쏠릴 것**

- 따라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모든 시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도 함께 추진** 필요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현행 유지** 필요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등 고려**시 **위기극복**에 **매진**해야할 시점에 **법 개정 추진 부적절**

참고1 ILO 핵심 협약 관련 정부입법안(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실업자·해고자	ㅇ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인정 ㅇ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임원자격	ㅇ 노조 임원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결정 ㅇ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
전임자 급여지급	ㅇ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면제한도 초과요구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 처벌규정 삭제 ㅇ 근로자는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섭 등 법상 정해진 업무만 수행 가능 ㅇ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규정 신설 ㅇ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ㅇ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의무 부과 ㅇ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 규정 신설 ㅇ 국가 및 지자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기업·산업·지역별 등)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신설)
사업장 점거	ㅇ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간 조화 위해,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ㅇ 현행 2년 상한을 3년 상한으로 확대

참고2 ILO핵심협약 미비준 현황

1. 결사의 자유

□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주요 내용)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 원칙 규정, ▲자발적인 단체 설립·가입 권리, ▲설립된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 보장 등

○ (미비준 국가) 한국, 미국, 뉴질랜드, 중국, 싱가포르 등 32개국

□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 (주요 내용) 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반노조적 차별행위로부터의 보호, ▲노사단체간 상호 불간섭, ▲자율적 단체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

○ (미비준 국가)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 21개국

2. 강제노동 금지

□ 제29호(강제노동 협약)

○ (주요 내용) 모든 형태의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 금지

- 다만,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 등은 예외로서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음

○ (미비준 국가) 한국, 미국, 중국, 아프가니스탄 등 9개국

□ 제105호(강제노동 철폐 협약)

○ (주요 내용)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 등 5가지 형태*로 부과되는 강제노동 금지

* ①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제재, ②경제개발을 위한 노동 동원, ③노동규율 수단, ④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⑤인종·사회·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 수단

○ (미비준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12개국

보고안건

Ⅲ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및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 안내

고용유지 및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추진경과

□ 고용유지 및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건의·홍보 경과

- ㅇ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지원제도 안내(2.14)
- ㅇ 對정부 정책제언(2.27)
- ㅇ 서울시장과 코로나19 관련 긴급 간담회(3.2)
- ㅇ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3.4)
- **ㅇ 코로나19 대응 위한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3.5)**
- ㅇ 청와대 경제주체 원탁회의(3.18)
- ㅇ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3.25)
- ㅇ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3.26)
- ㅇ 국무총리 경제5단체장 간담회(3.26)
- ㅇ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제도 및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안내(3.27)
-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실무간담회(4.2)**

  * 전시·이벤트, 급식, 자판기운영, 공예 업계 참석

- **ㅇ 고용노동부장관-중앙회장 오찬 간담(4.17)**
- **ㅇ 고용노동부차관 경제4단체장 부단체장 간담회(4.22)**
- ㅇ 경제부총리 경제5단체장 간담회(4.27)
- ㅇ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사항 안내(4.29)
- **ㅇ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5.14)**
-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뿌리업계 실무간담회(5.29)**
-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6.5)**
- **ㅇ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6.8)**
- **ㅇ 고용유지 및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권역별 설명회(6.9~6.11)**

  * 6.9(대전, 59명 참석), 6.10(광주, 60명 참석), 6.11(부산, 75명 참석)

- **ㅇ 고령자 고용지원금 확대 고용노동부 건의 및 보도(6.12)**

□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과제 반영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조치(3.25)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휴직수당 90%까지**(기존 75%) 지원

○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4.22)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 **추가 지정**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월50만원×3개월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조치 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4.28)

- 필수기능인력 분야 인력 공백 발생, 사업 확장 등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 불가능한 경우** 간단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신규채용 허용**

고용유지 및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세부내용 리플렛 참조

ㅇ **사업개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인 이상 기업, 모든 업종**

ㅇ **지원요건** : 총 **근로시간 20% 초과**해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ㅇ **지원내용**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지원**

- **(지원비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
- **(지원한도)** 상한액 **1일 6만6천원**(월198만원), 최장 연180일

2)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ㅇ **사업개요** :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시기**가 **'20.3.1 이전**인 근로자

ㅇ **지원요건** : ①**고용조정 불가피**하고, ②**무급휴직 요건 충족**한 경우

-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기준 (다음 중 하나 충족 시)

기 준		제출 서류(예시)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생산대장
매출액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 ②**무급휴직 요건** 충족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기 준	제출 서류
1) (무급휴직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이상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3)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4)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하지 않아야 함**	1)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 지원절차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계획 심사·통보	⇨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 고용센터 (조치 7일전)		고용센터		사업주

⇨	지원금 신청 (매달)	⇨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근로자

○ **시행기간** : '20.7.1~12.31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비교

- **기존 절차**도 **유지**하여, 사업장별 경영사정 감안하여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TWO-TRACK으로 운영

구 분	지 원 절 차		지 원 수 준
일반절차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월 50만원)**

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ㅇ **지정기준 및 요건**

-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 있는 업종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 업종 평균보다 5% 낮은 경우
  2) 해당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직전 1년 전보다 2배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업종 실업급여 신청자가 이전 1년간 신청자 수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이를 충족 못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 주요기업의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휴·폐업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가능

ㅇ **지정 절차**

신청	⇨	현장실사, 관계부처 협의	⇨	결정
업종별 단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ㅇ **지원대상** : 해당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

ㅇ **지원내용**

구 분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지원)	ㅇ휴업수당의 90% 수준 ㅇ**1일 한도 7만원**	ㅇ휴업수당의 90% 수준 ㅇ1일 한도 **6만6천원**
무급휴직 지원 (근로자 지원)	ㅇ무급휴직 실시**(30일)** ㅇ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 휴업**(1개월)** ㅇ**무급휴직 신속지원금 즉시** 지급	ㅇ무급휴직 실시**(90일)** ㅇ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 휴업**(3개월)** ㅇ**무급휴직 신속지원금 유급휴업 1개월 실시후** 지급
고용·산재보험료 혜택	ㅇ**6개월** 연장	ㅇ**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납부기한 연장
건강보험료 혜택	ㅇ연체금 징수 예외 ㅇ체납처분 예외	ㅇ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 30% 감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확대	ㅇ2천만원	ㅇ1천만원

ㅇ **최근 지정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3.16~9.15)
-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공항버스업, **전시・국제회의업**(4.27~9.15)

□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주요내용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ㅇ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ㅇ **지원요건 :** [1]**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2]**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3]**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로서 3가지 중 선택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지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해야 함)
> *** 정년 도달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ㅇ **지원수준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최대 2년간**

*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

ㅇ **지원절차**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 (매분기)**	⇨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 [1]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2]1년 이상 고용된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3]업종별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제조업 등)		**2%**

○ 지원수준 :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대규모 10%)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요건 심사	⇨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 향후 계획

○ **고용유지 지원제도 추가 개선** 필요사항 지속 건의

-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 **90% 지원기간 연장**(현재 4~6월)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액**(6만6천원 → 7만5천원) **및 지원기간 한도 확대**(연180일 → 코로나 종료시까지 한도 삭제), 요건·절차 간소화 등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건의 및 **신청 지원** 등

○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지속 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기간 연장 : 2년→**3년** - 지원금 확대 : 월30만원→**50만원** - 요건 완화 : **뿌리업종 중심**으로 완화	- '20년말까지로 설정된 **일몰 폐지** - 지원금 확대 : 분기30만원→**90만원** - 요건 완화 : **업종별 지원기준율** 조정

○ **고용유지** 및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개선·신설사항** 적극 **홍보**